

# '세트물품' 관련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

## □ '세트물품' 규정이란?

예를 들어 파스타 세트(HS1902호)가 파스타면(HS1902호, 원산지물품), 토마토소스(HS2103호, 비원산지물품)로 함께 소매용 포장되어 있을 때,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더라도 **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의 일정수준(10~15%)을 넘게 되면 원산지가 불인정되는 특례 규정**입니다.

[ 세트물품 관련 협정명 및 결정기준 ]

협정명	결정기준	협정명	결정기준
한-중 FTA	FOB가격의 15%	한-EFTA FTA	공장도가격의 15%
한-미 FTA	조정가치의 15% (단, 섬유류세트의 경우에는 10%)	한-터키 FTA	공장도가격의 15%
한-EU FTA	공장도가격의 15%	한-페루 FTA	총 가치의 15%
한-캐나다 FTA	공장도가격의 15%	한-콜롬비아 FTA	조정가치의 15%

## □ '세트물품'이 되려면? → 아래 'HS통칙 제3호 나목'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는 물품

-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,
-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한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어야 하며,
- 재포장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매포장된 것이어야 합니다.

**【참고】** 세트물품으로 분류되어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에 유의하여야 할 품목 예시

라면(제1902호)	이발기 세트(제8510호)	충전기 세트(제8504호)	제도기 세트(제9017호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※ 세트물품 규정이 있는 협정상대국으로의 수출물품에 **역외산 구성품**이 포함된 경우에는 **반드시 유의**하여야 합니다.

## □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가의 협정 배제 예시

한국			EU
<b>품명: 이발기세트(HS 8510.20)</b>		⇒	<b>FTA C/O 발급 불가</b>
한국산 전동이발기	+ 중국산 미용가위 (공장도가격의 15% 이상)		

## □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협정 배제 예시

중국			한국
<b>품명: 충전기 세트물품(HS 8504.40)</b>		⇒ 수입 시, 한-중 FTA 적용	<b>FTA 사후검증 협정배제</b> → 수정신고
중국산 충전기	+ 일본산 충전지 (FOB가격의 15% 이상)		

## □ 관련사항 안내

- 본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컨설팅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- ☎ 서울세관 FTA2과 (☎ 02-510-1487/1496)